

#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01
----------	-----

제출년월일 : 2002. 10. 28.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제정사유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동부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독서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이용과 문화예술 활동 및 평생 교육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도서관의 업무(안 제3조)
- 나. 자료의 열람 및 대출(안 제5조)
- 다. 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안 제6조)
- 라.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등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안 제9조)
- 마. 사용료 등(안 제10조)
- 바. 도서관 및 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1조)
- 사. 위탁운영(안 제14조)

##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공공도서관 설립), 동법 제2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등) 및 동법 제22조(공공도서관의 운영)
- 입법예고 : 결과 의견내용 없음

## 4. 본 문

- 불임과 같음

##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동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독서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정보 이용과 문화예술활동 및 평생 교육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도서관은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468-14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자료의 열람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주최 및 장려
6.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8.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장 및 직원) ①도서관에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별 정원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도서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자료의 열람, 대출) ①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열람 및 대출 할 수 있다.

②자료의 열람, 대출의 경우 도서의 권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열람 또는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한 후 열람 및 대출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폐기) ①관장은 자료의 이용가치가 소멸되거나 파손된 도서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3%이하로 하되 당해 연도 도서구입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손해배상) 시설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도서관의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도서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당해 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관광과장, 화화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문화예술계 등 지역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문화공간의 운영계획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상과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 교육행정기관이나 비영리 공익법인 등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2년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서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성동부도서관 「시청각실」 시설사용료(제10조 관련)

시설명	면적 (㎡)	사 용 내 역	1일사용료 (원)	비 고
시청각실	142	○ 영상장비,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행사 ○ 전시, 공연, 기타 행사	50,000 (70,000)	( )는 관람료를 받는 전시,공연 등
		○ 냉.난방시설 (1회3시간기준)	30,000	3시간초과경우 1시간당 10,000원가산

【별표 2】

복 사 기 사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B5	A4	B4	A3
1장 단면	30	40	50	60
1장 양면	50	70	90	110

